

6

학점인정 재심 신청서

PM2016-22

❖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(2016.1.6) 재정으로 2016.3.1 이후에 인정받은 학점은 인정받은 분기 기준으로 그 다음 분기에 재심신청을 해야 합니다. 재심신청은 방문접수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방문접수해야 하며 증빙서류인 강의계획서는 이수 당시 강의계획서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 강의계획서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이 필수입니다.

+ 기존에 학점신청을 하여 이미 인정받은 학습구분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요구할 때

[별지 제12호 서식]

1 학습인정 재심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		
인적사항	성명	학습자번호 또는 생년월일			
재심 신청 학습 과목	2 기인정 학습구분	3 변경희망 학습구분*	4 이수 과목명	학점	5 인정 희망 과목명**
학점인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을 신청합니다.					
신청인: _____ 년 ____ 월 ____ 일 (서명 또는 인)					
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					

※ 재심 신청학점 작성시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두 장 작성
※ 강의계획서 등 첨부하고자 하는 서류는 재심신청서와 함께 제출

- 1 학점인정 재심신청서** : 평가인정학습과목 외의 학점인정대상학교, 시간제로 이수한 과목의 학점 인정받은 학습구분에 대해 재심을 받고자 할 경우,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신청
 - 2 기인정학습구분** : 이미 인정받은 과목에 대한 학습구분 기재
 - 3 변경희망 학습구분** : 학습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구분 기재
 - 4 이수 과목명** : 재심신청 대상 과목명 기재
 - 5 인정 희망 과목명** : 재심신청 대상 과목이 학습자가 진행하는 표준교육과정의 어떤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지 '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과목명'을 기재
- ※ 재심신청의 경우, 반드시 학습자가 수강한 당시의 강의계획서(수강한 대학을 통해 자료 확보)를 확보하여 첨부해야 함(강의계획서에 해당 대학의 교무처 직원 및 학과장 등을 통해 해당 강의계획서가 원본임을 확인하는 직인 필요).

[기타 신청 종류]

구분	내용	신청 방법
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	현재 진행 중인 학위과정·전공을 다른 학위과정·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	온라인 신청
학위연계 신청	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가 다른 학위과정·전공을 추가로 학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	
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신청	처리완료 된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 * 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.	
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신청	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·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절차 * 전공·교양호환과목: 해당 학습자의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	
학위신청	희망 학위과정/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하는 절차	

국가평생교육진흥원

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(서초동 1365-23번지)
Tel. (국번없이) 1600-0400 Fax. 02-3780-9850 www.cb.or.kr

PL5 학점은행제 서식 작성방법

1 학습자등록신청서

+ 최초 1회 작성

[별지 제4호 서식]

접수번호		성명		홍길동		접수일		주민등록번호		-	
1 주소	인적사항	□□□ - □□□□		○○도 ○○시 ○○동 111-111							
		☐ 자택		()							
		☐ 유대본		()							
E-Mail											
3 회망 학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학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학사	회망 전공	경영학	2 학위 취득 희망시기					<input type="checkbox"/> 2월 <input type="checkbox"/> 8월		
4 환불계좌번호	(한국)은행 #○○○ - ○○○ - ○○○		(예금주: 홍길동)								
5 최종출신고	△△대학		외국교육기관 국가명*								
최종학력	고졸	전문대학 졸업		전문대학 졸업		대학 졸업		대학 졸업		학력인정고	
		2년제 중퇴	3년제 중퇴	재학	2년제	3년제	중퇴	재학	중퇴	졸업	
6 회망학위 구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학사학위(140학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사학위(타전공 학위)**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학사학위(80학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학사학위(120학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학사학위(타전공 학위)**										

- 1 주소 :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지로 기재함.
- 2 학위취득 희망시기 : 학위취득 계획 시기를 기재함.
- 3, 6 회망학위 및 회망전공 :
 -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기재 (학점은행제 홈페이지 - 표준교육과정 참고)
 - 회망 학위에 따른 자격 구분

구분	회망 학위에 따른 자격 구분
학사학위 (140학점)	고등학교 졸업자,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전문대학 졸업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
학사학위 (타전공 학위)	학사학위를 취득한 자(4년제 대학 졸업자),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
전문학사학위 (80학점)	고등학교 졸업자,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(2년제 대학에 해당하는 학위과정)를 취득하고자 할 때
전문학사학위 (120학점)	고등학교 졸업자,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3년제 전문학사(학위) 과정을 수강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 '이료'전공에 한함.
전문학사학위 (타전공학위)	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,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

- 4 환불계좌번호 : 학습자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,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 받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함.
- 5 최종출신고 및 최종학력 :
 - 최종출신 학교명 및 학력내역 표기(예: 고졸 - ○○고등학교/전문대졸 - ○○전문대학 재학·중퇴·졸업/학력인정고 졸업 - ○○대학교 재학·중퇴·졸업 등)
 - 2개 이상 대학 중퇴·졸업 시에는 최종 학력사항을 기준으로 작성

2 학점인정신청서

+ 학점인정 신청 시 마다 작성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별지 제5호 서식(신설 2015.10.20))

접수번호		성명		접수일		처리기간		60일	
1 학점원 및 신청학점	인적사항	학점원		학점원		학점원		신정 학점	
		1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							
		2.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							
		3.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							
		4.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정 이수							
		5.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							
		6.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							
		7.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및 그 문헌상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 이수							
		계							

- 1 학점원 및 신청방법 : 학점원별 신청학점의 소개 및 총 신청학점의 합계를 기재함.
(예) 시간제등록 21학점, 자격증 2종(각 16학점) 신청할 경우 : '3. 시간제등록 학습과정 이수 - 신청학점 21학점', '4. 자격취득 - 신청학점 32학점' 기재하고, '총계 53학점' 기재

3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

+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신청 시 작성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별지 제6호 서식(신설 2015.10.20))

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				
2 학습구분	3 과목명	4 학점	5 종강년월일	6 교육훈련기관명
전공	경영학개론	3	20XX. 3. 1	○○대학부설평생교육원

- 1 평가인정학습과목 :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목
- 2 학습구분 : 「전필, 전선, 교양, 일선」으로 구분하여 기재
 - 회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신청과목에 대한 학습구분을 기재함.
 - 전공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학습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구분을 선택하여 기재함.

* 전공교양호환과목 :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[표준교육과정] → [전공교양호환과목]에서 확인

[학습구분]

전공 :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(혹은 학점인정 전공필수과목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과목)으로 구분됨.
교양 : 사회생활,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임.
일반선택 : 회망 학위 및 전공과정의 전공 및 교양과목이 아닌 타 학위 및 전공의 전공과목임.

- 3 과목명 : 학습자가 이수한 과목명을 정확히 기재함.
- 4 종강년월일 : 학습과목의 종강년월일을 기재함.
- 6 교육훈련기관명 : 학습과목을 이수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명 기재 (예 : ○○대학부설○○교육원 등)
* 평가인정학습과목명, 종강년월일, 교육훈련기관명 등의 정보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[마이페이지] - [미신청학점]에서 확인할 수 있음.

4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

+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신청 시 작성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별지 제7호 서식(신설 2015.10.20))

1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				
2 학습구분	3 과목명	4 학점	5 이수년도/학기	6 기관명
전공	전산회계	2	20XX / 1	○○대학교
교양	영어회화1	3	20XX / 1	□□대학

- 1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 : 졸업·중퇴한 전문대학, 중퇴한 4년제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
- 2 학습구분 : 전공(전필, 전선), 교양, 일선으로 구분하여 기재함.
* 실제 학점인정결과는 학습자가 기재한 회망학습 구분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, 신청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근거로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학습구분이 결정됨.
- 3 과목명 :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과목명을 정확히 기재함.

[주의사항]

- 2년제 전문대학 중퇴·졸업 : 최대 80학점, 3년제 전문대학 중퇴·졸업 : 최대 120학점, 4년제 대학교 중퇴 : 최대 140학점 범위내에서 학점인정 됨.
- 인정 최대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일부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학점을 절사하여 신청할 수 있음.
예) 2년제 전문대학을 8학점으로 졸업한 경우 : 1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을 제외하고 신청하거나, 1학점으로 이수한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한과목을 1학점 절사하여 신청가능함.

5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이수

+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습과목 신청 시 작성
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별지 제8호 서식(신설 2015.10.20))

1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				
2 학습구분	3 과목명	4 학점	5 이수년도/학기	6 기관명
전공	아동발달	3	20XX / 1	○○대학교

- 1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: 시간제등록으로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
- 2 학습구분 : 전공(전필, 전선), 교양, 일선으로 구분하여 기재함.
* 실제 학점인정결과는 학습자가 기재한 회망학습 구분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, 신청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근거로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학습구분이 결정됨.
- 3 과목명 :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과목명을 정확히 기재함.